

하도급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규정

- 제 1 장 하도급거래 서면 발급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대흥기획(이하 당사)과 협력업체간 하도급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대해 당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대상 서면)

하도급거래의 거래개시 및 거래과정에서 당사가 발급해야 할 서면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발급 대상 서면		비 고
거래개시 (제3조)	①	개별(기본)계약서(부속합의서, 변경 계약서)	하도급법 제3조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거래과정 (제8-16조)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④	검사 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⑤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⑥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⑦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제3조 (하도급거래 서면의 발급방법)

1. 당사가 서명(공인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2. 협력업체는 발급받은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회신한다.
3. 아래와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4조 (하도급계약서의 발급)

1. 당사가 하도급법 상 광고물 제작 등의 용역 수행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전자 계약서 포함)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협력업체는 발급받은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회신한다.
2. 당초 계약 내용이 광고주의 위탁 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한다.
3. 하도급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반영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①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납품일 및 장소
 - ②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③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제공 시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그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④ 원재료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5조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한다.

- ① 당사가 용역 수행을 발주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는 발주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발주 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발주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 ②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않은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천재나 그 밖의 사

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제6조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할 시에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협력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 (검사결과 통지서)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법 제9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서면을 발급하여 통지해야 한다.
2. 다만, 당사는 아래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①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②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③ 당사와 협력업체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3.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용역 수행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2. 감액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의 발급)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협력업체와 미리 합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계약변경 내용통지서의 발급)

1.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 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발급해야 한다.

- 제 2 장 하도급거래 서면 보존규정 -

제11조 (보존대상 서면)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보존해야 할 서면은 아래와 같다.

구분	보존 대상 서면	비 고
의무발급서면	① 기본계약서(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11조
	④ 검사 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⑤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8조
	⑥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9조
	⑦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주요 하도급거래 증빙서류	⑧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⑨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⑩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표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⑪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⑫ 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⑬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⑭ 입찰명세서, 낙찰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제12조 (서면의 보존방법)

1. 서면(전자계약서면 포함)은 서면이 발급, 날인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2. 당사와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은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혹은 위탁한 의무 공급을 완료한 날을 의미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로 시행한다.